

금융감독원의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시사점

최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기 점검(이하 "본건 점검")을 진행하여 재무 및 비재무 공시항목 전반에서 기재 누락 및 불충분한 작성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재무사항 중에는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가 빈번했고, 비재무사항에서는 2024년 중 공시의무가 강화된 (i)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ii)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내용, (iii)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와 같은 점검 결과는 많은 상장기업들이 현행 공시서식 상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추후 각 기업의 정기보고서 공시 실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과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본건 점검 결과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무사항 점검은 정기보고서 작성에 앞서 2025년 2월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고한 13개 중점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신규 보고회사 및 전년도 미흡 사례가 있었던 회사를 포함한 2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분의 점검 항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특히 다수 회사에서 발견된 기재미흡 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재고자산]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 실사현황 기재 누락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공시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채권 또는 대손충당금 금액 등이 감사보고서 주석과 불일치

[회계감사인] 변경 회계감사인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 기재를 누락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각주에 변경사유를 기재

[내부통제]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의 인력·경력 등을 미기재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계감사인의 의견 미기재

Related Areas

기업지배구조 센터

Contact

이화석 변호사

02-528-5197

hwasuklee@yulchon.com

김현정 변호사

02-528-5150

hyunjeong@yulchon.com

문성 변호사

02-528-5393

smun@yulchon.com

이민재 변호사

02-528-6141

minjaelee@yulchon.com

오용석 고문

02-528-6436

yongsukoh@yulchon.com

임창주 수석 전문위원

02-528-5679

cjlim@yulchon.com

정한욱 전문위원

02-528-6116

hwjung@yulchon.com

[투자주식 평가방법]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기재 누락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i) 재고자산·대손충당금 등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ii) 회계감사인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회계감사인 명칭과 감사의견 이외에 변경 사유(회사의 의사 혹은 기타 법규 등)를 기재하고, (iii)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현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충실히 기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가.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금융 당국은 자기주식 보유·처리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24. 12. 31. 자기주식 관련 공시의무를 전반적으로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말 기준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중이 15%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111개사를 점검하였고,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미흡 및 소각 등 처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사례를 주로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미흡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주식 보고서] 사업보고서에 자기주식 보고서 미첨부 또는 지연하여 제출하거나 자기주식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 확인 불가한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자기주식 보유현황(표) 기재 누락 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사항보고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소각 등 처리계획] 자기주식 보유목적, 취득 및 소각 등 처리계획을 미기재하거나 계획이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나.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총 논의내역

한편, 금융당국은 2024. 4. 12.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제안 등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보고서) 공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공시대상기간 동안 소수주주권(주주제안권 등) 행사가 확인된 주권상장법인 187개사를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미흡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소수주주권 행사 현황 등]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사실, 주주제안의 목적사항 포함 여부 등을 미기재 또는 일부 누락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항목 전체를 미기재 또는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주요 논의내용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경우

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진행상황

금융 당국은 2024. 12. 31.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계약 진행상황 정기공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업종별 평균 공시 횟수 초과 또는 계약 해지공시 등 기재 오류 가능성이 높은 157개사를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① 계약내역 및 진행상황, ② 대금 미수령 사유, ③ 향후 판매·공급 이행 및 대금 수령 관련 예정사항 및 추진계획이 주로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미흡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진행상황] 진행 중인 판매·공급계약이 있음에도 계약 내역 및 진행 상황 등을 누락하거나 일부 항목을 미기재·미흡 기재

[대금 미수령 사유] 누적 대금수령 금액이 0원인 경우 대금 미수령 사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설명 부족

[향후 추진계획] 향후 판매·공급 이행, 대금수령 등 관련 내용 중 일부를 누락 또는 계획의 변동 가능성을 미기재하거나 대금 미수령 계약에 대해서만 향후 계획을 작성

라. 비재무사항 작성 관련 주의 사항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비재무사항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들이 추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2025년 하반기 중 보완할 것을 예고하고, 본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공시제도 보완도 지속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 계획을 결정한 사유·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에서 이사회 승인일 사이에 자기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동 사항을 계획에 반영
-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총 논의내역 기재: 주주제안권 외 소수주주권 행사(이사 등 해임청구권,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 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소수주주권 행사가 각하·취하된 경우에도 기재
- 단일판매·공급계약의 사후공시: 향후 추진계획은 (대금 미수령 계약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전체 계약을 대상으로 향후 판매·공급 이행, 대금수령 등 관련 예정사항 및 계획을 충실히 기재

3. 시사점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는 상장법인 등의 재무상황, 사업내용 등 기업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보고서 허위 또는 부실기재시 해당 법인에 대하여 금융당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임원 해임권고, 경고 또는 주의 조치** 외에 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통보**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중요사항 부실기재가 과다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을 유의해야

Yulchon Legal Update

합니다. 만일 재무제표 심사대상에 선정되면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에 착수하고 그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징금, 감사인 강제 지정, 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보다 1달 이전 시점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공개적으로 사전 예고한 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매년 달라지므로 매년 2월경 금융감독원의 사전 예고 사항을 명확히 숙지한 후 사업보고서 작성시 중점 점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보다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2025. 7. 11(금) 15:00부터 금융감독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여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사업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작성 유의사항과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